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9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강대식 · 박준태 · 백종현

고동진 · 김상훈 · 최수진

유용원 · 한기호 · 구자근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 유)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2. · 3. (생 략)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어 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 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 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u>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